

2022 하계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내



2022. 04.



아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

2022 하계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내

I 목적

- 현장실습교육 확산을 통한 재학생 취업경쟁력 강화 및 대학정보공시 지표 향상
- 지역산업계 우수 중견기업 현장실습 업체 발굴 및 가족회사 유치

II 근거

-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(교육부 고시 제2021-33호)
-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매뉴얼(교육부 2021.07.)
- 아주대학교 현장실습수업 운영규칙(개정, 2021.12.29.)
- 아주대학교 산업현장실습 운영기준(제정, 2021.11.18.)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69호)

III 지원대상

- 아주대학교 3, 4학년(4학기 이상 이수) 재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 (학점이수 필수)
 - 공과대학: 기계공학과, 산업공학과, 화학공학과, 첨단신소재공학과, 응용화학생명공학과, 환경안전공학과, 건설시스템공학과, 교통시스템공학과, 건축학과
 - 정보통신대학: 전자공학과
 - 소프트웨어융합대학: 소프트웨어학과, 사이버보안학과, 미디어학과, 국방디지털융합학과
 - 자연과학대학: 수학과, 물리학과, 화학과, 생명과학과
 - 경영대학: 경영학과, e-비즈니스학과, 금융공학과
 - 인문대학: 국어국문학과, 영어영문학과, 불어불문학과, 사학과, 문화콘텐츠학과
 - 사회과학대학: 경제학과, 행정학과, 심리학과, 사회학과, 정치외교학과

※학과 정보가 필요하시면 <https://www.ajou.ac.kr/kr/admission/list01.do>
(교육>대학 메뉴에서 학과별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)

IV

표준현장실습 인정기준

- 1일 8시간,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되는 현장실습 (최소 4주(20일), 160시간, **공휴일은 실습기간에 포함되지 않음**)
- 현장실습은 **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포함한 실무 실습과정**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**수업요건을 갖추어야 함**(수업계획, 평가방법 등)
- **기업 실습지원비 최저임금의 75%(월 1,435,830원) 이상 지급**
- **전체 실습시간의 10~25%는 교육시간으로 배정하여 운영**
- 실습내용은 사전에 협의되어야 하며 목적·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음
- 학생 개인섭외, 조기취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장실습학기제로 인정되지 않으며, 개인적으로 기업을 섭외하거나 (공채)인턴 등에 합격한 경우 반드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사전 문의

V

운영 일정

※하단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구분	일정	비고
기업 참여신청	~2022.05.13.(금) (이후 상시접수)	온라인시스템 접수/선발진행
학생 설명회 (온라인으로 진행)	1차) 2022.05.17.(화) 18시 2차) 2022.05.26.(목) 18시	
학생 지원신청	2022.05.16.(월)부터 (상시접수)	
매칭 완료	~2022.06.17.(금)까지	
사전 오리엔테이션 (온라인으로 진행)	2022.06.27.(월) 또는 06.28.(화) 예정	
현장실습 진행 ※기간 변경 등 실습조건 변경 시 센터와 사전 협의 필수	<u>2022.06.30.(목)~08.31.(수)</u> ※위 기간 내 1개월(4주) 또는 2개월(8주)	실습기간 산정 시 공휴일 제외

※아주대학교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 ☞ <https://how.ajou.ac.kr>

※현장실습 운영기간 예시(1개월, 2개월, 6개월)

1개월(4주) 실습	2개월(8주) 실습
2022.06.30.~07.29	2022.06.30.~08.31
2022.07.01.~07.31	2022.07.01.~08.31
2022.08.01.~08.31	
6개월(하계~2학기) 실습의 경우 2022.06.30.~12.29	

○ 현장실습 참여신청 방법

- (온라인 직접신청)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 (<https://how.ajou.ac.kr>)에서 기업 회원가입→센터의 가입승인→기업 로그인→ 2022년 하계방학 현장실습 탭 클릭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
- (이메일 신청)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(첨부서식 참고) 작성 후 담당자 메일로 송부 (how@ajou.ac.kr) *실습기간, 실습지원비, 실습직무, 학생요건 등 내용 상세히 기재 요망

○ 주요 안내사항

실습기업 의무사항	1) 실습지원비: 최저임금의 75%(월 1,435,830원) 이상 지급 ★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표준현장실습은 최저임금 75%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1개월 단위로 직접 지급하여야 함(2022년 최저시급 9,160원) 2) 학생 산재보험 가입 및 확인서 제출 ★고용노동부 개정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의거, 대학생 실습생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추가됨에 따라, 실습기관은 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(4대보험 가입 의무는 아님) 3) 실습시간의 10~25%는 교육시간으로 배정 운영 ★현장실습 지도위원을 반드시 배정하여 전체 실습시간 중 10~25%는 교육시간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시간과 연동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도록 함 (ex. 교육시간 10% 경우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의 90% 지급/ 교육시간 25% 일 경우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의 75% 지급)								
아주대 지원사항	1) (학생) 상해보험 가입 -실습기업의 산재보험과는 별도로, 센터에서 실습 참여학생 대상 상해보험 가입(실습시작 전) 2) (학생) 지원금 지급 -학점이수에 따른 지원금으로 3학점(160시간)은 40만원, 6학점(320시간)은 80만원 지급 -기업실습비와는 별도로, 실습종료 후 센터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함 (※LINC3.0사업 선정 시 지급방식 변경될 수 있음. 5p 재정지원사업의 기업 실습지원비 지급방식 변경(예정) 내용 참고) 3) (기업) 지도비 지급 -학생 1인당 20만원 씩 지도비 지급 (실습기간 무관) -2022학년도부터 개인계좌 지급이 불가능하며, 법인계좌로 지급 (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수) -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자 정보: 124-82-14602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(대표자 김상인) -실습종료(학생 성적평가 완료) 후 2022.9월 말 지급 예정 (※6개월 실습일 경우 하계/2학기 지도비 각각 지급됨. 하계 지도비 9월 말, 2학기 지도비 2023.1월 말 예정) 4) (기업) 아주대 사이버연수원(AEIN) 무료수강 혜택 제공 -실습생 1명 매칭 시, 재직자 100명까지 사이버연수원(https://ajou_aein.elumcampus.co.kr) 무료수강 혜택 제공(아주대 가족회사 가입 후 이용 가능) -4대 법정 의무교육 및 직원 역량 강화 직무교육 콘텐츠 제공 5) (기업) 산학협력 마일리지 부여 -실습지원비 1만원 당 1마일리지 적립(현장실습 종료 후 센터에서 적립 신청)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79 1825 1474 2042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기업 마일리지 활용 영역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업지원사업 우대</td><td>기업R&D지원사업 등 관계부처·지자체의 16개 사업에 기업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가점 등 우대</td></tr> <tr> <td>K-ESG 가이드라인 연계</td><td>K-ESG 가이드라인 항목에 '산학협력 활성화 기여' 포함</td></tr> <tr> <td>금융혜택 등</td><td>마일리지 적립 상위 300개 기업 대상으로 시중은행 금리우대 등 지원 예정(2023년 이후)</td></tr> </tbody> </table> ※세부사항은 '산학협력 마일리지' 홈페이지(http://www.muic.or.kr)참고	기업 마일리지 활용 영역		기업지원사업 우대	기업R&D지원사업 등 관계부처·지자체의 16개 사업에 기업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가점 등 우대	K-ESG 가이드라인 연계	K-ESG 가이드라인 항목에 '산학협력 활성화 기여' 포함	금융혜택 등	마일리지 적립 상위 300개 기업 대상으로 시중은행 금리우대 등 지원 예정(2023년 이후)
기업 마일리지 활용 영역									
기업지원사업 우대	기업R&D지원사업 등 관계부처·지자체의 16개 사업에 기업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가점 등 우대								
K-ESG 가이드라인 연계	K-ESG 가이드라인 항목에 '산학협력 활성화 기여' 포함								
금융혜택 등	마일리지 적립 상위 300개 기업 대상으로 시중은행 금리우대 등 지원 예정(2023년 이후)								

○ 기타 참고사항: (재정지원사업의) 기업 실습지원비 지급방식 변경(예정)

※교육부 LINC3.0사업에 본교가 선정될 경우, LINC3.0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실습지원비 지급방식이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. 구체적인 적용 시기 및 절차 등은 LINC3.0 사업 선정여부가 확정되는 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.

- (현행) 기업과 학교는 학생에게 지원금을 각각 지급
- (변경후) ①기업→학생 최저임금 100%이상을 선지급(실습기간 중) ②기업→학교에 비용(최저임금의 25%금액) 지급 요청(실습종료 후) ③학교→기업에 해당 국고금액 지급
- 근거규정: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(교육부 고시 제2021-33호) 제30조 5항(하단 내용 참조)

제30조(지도·감독 등)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"각 정부부처 등"이라 한다)은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·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 현장실습 계획을 세운다.

1. 정부차원의 혼선 방지와 국가차원의 표준화되고 일원화된 운영을 위해 각 정부부처 등에서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형태가 포함된 재정지원사업 등은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 정부부처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점인정과 무관한 일경험수련 과정으로 운영한다.
3. 제1호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할 경우 각 정부부처 등에서는 지원비(이하 "국고 및 지방비") 지급 시 「최저임금법 시행령」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한다.
4. 제3호에 따른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방법은 실습기관에서 「최저임금법 시행령」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,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실습기관이 해당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 제3호에 따른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학교는 해당 금액을 실습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각 정부부처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.

- 적용시기: 추후 안내 예정

(붙임자료) 1. 2022 하계 현장실습 관련 서식

-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
-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
-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
- 사전 서면점검서(신규 실습기관용)
- 실습기관 섭외 내역서(섭외교수용)
- 현장실습 방문지도보고서(지도교수용)
- 현장실습 주간업무일지(실습학생용)
- 현장실습 종합보고서(실습학생용)
- 현장실습 설문조사서(실습학생용, 실습기관용)
- 현장실습 지도비신청서(실습기관용)

2. 2022 현장실습 학과별 하계 목표인원 현황표

☎문의처: 아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031-219-1779,1785 how@ajou.ac.kr